

의안번호	제2857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##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57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 14.  
제 출 자: 고성군수

##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개정이유

고성군새마을부녀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신설하여 새마을 운동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약칭 정비(안 제3조)
  - 회의참석 수당 규정 신설
  - (기존) 군수 → (변경)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 제3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제28조

나. 예산조치: 2025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(84,800천 원)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  
· 특이사항 없음 [(복지지원과-36624(2024. 9. 13.)호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1473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9. 20.(금) ~ 10. 10.(목), 20일간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11. 14.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**4. 본문: 붙임과 같음**

고성군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**고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수”를 “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 
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 
 설한다.

- 6.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·면장이 소집  
 한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 
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지원) <u>군수</u> 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 (지원) <u>고성군수</u> (이하 “ <u>군수</u> ”라 한다)-----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<u>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·면장이 소집한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</u>
6. (생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**붙임**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**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**1. 재정수반요인**

- 비용 산출근거(2025년 지급 기준)
  - 회의참석 수당 20,000원×16회×265명 = 84,800,000원
  - ※ 고성군 행정리(마을) 265개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.

**작성자: 행정과장 김 종 완**

## 참고

##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### 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

**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② 지방자치법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#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#### 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
가. 못·늪지·보(淤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하.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####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
다. 도시·군계획사업의 시행

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도(市道)·군도(郡道)·구도(區道)의 신설·개선·보수 및 유지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- 바.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, 광역시립공원, 군립공원,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
- 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파. 관광지,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거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너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  - 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 - 다. 시·도유산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  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 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 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 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- 7. 국제교류 및 협력
  - 가. 국제기구·행사·대회의 유치·지원
  - 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